

“ Start your healthy and happy life with us ”

건강한 삶과 즐거운 인생이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퇴원을 준비하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사회복지정보 안내서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사회사업팀

- 사회복지정보 목차 -

돌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1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6
▪ 노인돌봄전달체계 시범사업 ① 방문진료(왕진)서비스 -----	7
▪ 노인돌봄전달체계 시범사업 ② 퇴원환자관리 서비스 -----	8
▪ 노인돌봄전달체계 시범사업 ③ 요양서비스 -----	10
▪ 노인돌봄전달체계 시범사업 ④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11
▪ 노인돌봄전달체계 시범사업 ⑤ 주택개조 -----	12
▪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	13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14
▪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 -----	17

간호

▪ 의료기관 가정간호 -----	18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방문간호 -----	20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	21

보조기구/복지용구 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복지용구 -----	23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26
▪ 보조기기 무료대여 -----	28
▪ 강원도 보조기기센터 -----	29
▪ 가정 산소치료 -----	30

주거

▪ 주택 개조 -----	31
▪ 주거급여 -----	33

교통 및 이동

- 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 ----- 34
- 119 안심콜 서비스 ----- 35

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36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제도 ----- 37
- 긴급복지 지원제도 ----- 38
- 춘천형 위기가구생활안정지원사업 ----- 39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 40
- 국민연금 장애연금 ----- 41

일자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42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43
- 공공근로 ----- 44

사회복귀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 45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46

정신건강

- 정신건강복지센터 ----- 47

돌봄 가족을 위한 지원제도

- 가족돌봄 휴가제도 ----- 49
- 치매환자 가족 휴가 제도 ----- 50

[돌봄-0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준: 2022 /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1. 대상자

- 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하단 참조)이 있는 자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치매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혈관성 치매	F01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상세불명의 치매	F03
		알츠하이머병	G30
	뇌혈관질환	지주막하출혈	I60
		뇌내출혈	I61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I62
		뇌경색증	I63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기타 뇌혈관질환	I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파킨슨	파킨슨병	G20
		이차성 파킨슨증	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한의)	매병, 노망	자01
졸중풍		다04	
중풍후유증		다06	
진전		다05	
진전		차02.2	

2. 지원 내용

1) 서비스 종류

구분	내용		본인부담금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일반 20% 부담 - 40%감경대상자 12%부담 - 60%감경대상자 8%부담 - 국민기초수급권자 : 면제
재가급여	주·야간 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제공	- 일반 15% 부담 - 40%감경대상자 9%부담 - 60%감경대상자 6%부담 - 국민기초수급권자 : 면제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1-5 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잔존기능유지를 위해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훈련을 제공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 지원	
	단기보호	수급자를 월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	
특별연금 급여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특례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요양병원 간병비	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현재 시행을 유보하고 있음	
기타재가 급여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 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 (구입/대여)하는 장기요양급여		

2) 서비스 등급 별 혜택

(1) 재가급여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2) 시설급여

(단위: 원/1일당)

분류	수급	수가	본인부담금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1등급	65,750	13,150
	2등급	61,010	12,202
	3~5등급	56,240	11,248
노인요양시설	1등급	74,850	14,970
	2등급	69,450	13,890
	3~5등급	64,040	12,808

(3) 복지용구

대상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인지기능을 지원하는 용구를 재가 수급자에 한하여 연 160만원 이내에서 지원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15%, 감경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품목명	구입품목(10종)	대여품종(6종)	구입 또는 대여품목(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욕창예방 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실외용)

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 신청절차



갱신 신청 : 장기요양수급자로 결정되더라도 유효기간(1~3년)까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유효기간 만료일의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등급 기준

상 태	수 준	장기요양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45점 미만인자

3) 구비서류

대상자	서류	참고사항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장기요양의사소견서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직원이 방문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은 신청인은 의사소견서를 제출.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때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 다만, 의사소견서 대신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별도 제출.

4. 문의

- : 건강보험관리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www.longtermcare.or.kr)
- : 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 - 1000

▶ 퇴원 후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재가서비스(요양보호사)를 이용하거나, 요양원으로 입소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등급 판정이 필요하며, 퇴원 후 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등급판정까지는 보통 약 1-2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질환/환자의 상태에 따라 접수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 : 뇌졸중 첫 발병은 발병 후 3개월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이 가능함).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다면 퇴원 후 바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요양원으로 입소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급 판정을 기다리는 동안 서비스 이용 여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혹은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요양병원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진이 상주하여 장기적으로 입원이 가능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 판정과 관련 없음.

요양시설

- 노인복지법에 의한 생활시설
- 간단한 의료적 처치 및 처방은 가능하나, 의료적 필요성이 높으면 입소 어려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 (시설급여 판정) 필요함.



[돌봄-0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준: 2022 / 출처: 보건복지부 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매뉴얼)

1.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자

- 독거·존속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수혜자는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2. 서비스 내용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 서비스 (방문통원 등)	안전지원	방문안전지원	- 안전 및 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 재난안전 보건 복지 정보 교육) -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 말벗(정서지원)
		전화 안전 지원	- 안전, 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 재난안전, 보건, 복지 정보 제공) - 말벗(정서지원)
		ICT 안전 지원	- ICT 관리, 교육 - ICT 안전 안부확인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여가활동 - 평생교육활동 - 문화활동
		자조모임	- 자조모임
	생활교육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 - 보건교육 - 건강교육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 프로그램 -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지원	아동활동지원	- 외출동행
		가사지원	- 식사관리 - 청소관리
	연계서비스(민간후원자원)	생활지원 연계	- 생활용품 지원 - 식료품 지원 - 후원금 지원
주거개선 연계		- 주거위생개선 지원 - 주거환경개선 지원	
건강지원 연계		- 의료연계 지원 - 건강보조 지원	
기타서비스		-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특화서비스		-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 집단활동 - 우울증 진단 및 투약지원	

3. 문의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돌봄-03] 춘천시 노인통합돌봄전달체계 시범사업

① 방문진료(왕진)서비스

(기준: 2022/ 출처: 춘천시청)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에 의사가 직접 찾아가서 진료합니다.”

1. 신청대상

-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방문 진료를 희망하는 경우
(유형예시) 마비/수술직 후/신경계 퇴행성질환/육창 및 궤양/인지장애/통증관리 등

2. 서비스 내용

구분	의원	한의원
제공서비스	진찰, 기본검사, 질환관리, 처방, 주사 등, 방문간호지시서, 의사소견서 발급	진찰, 침, 뜸, 부항 등 진료급여목록의 한약제제 처방
본인부담금	6,210~37,280원	4,800~28,830원
	의료보장 유형(의료급여, 건강보험가입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남부통합돌봄본부: 033) 245-5985 / 북부통합돌봄본부: 033) 245-5988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돌봄-03] 춘천시 노인통합돌봄전달체계 시범사업

② 퇴원환자관리 서비스

(기준: 2022 / 출처: 춘천시청)

■ 퇴원환자 일시돌봄

1. 신청대상

-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퇴원환자 중 일시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관내 노인
- ※ 지원제외 : 장기요양등급판정 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2. 서비스 내용

- 건강관리/일상생활지원/식사제공/ 위생관리/여가활동지원/생활상담

무료입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
본인부담금	월 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노인 가구 <예> 1인 가구 2,179,220원 이하(2022년 기준 금액)

3. 신청서류

공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입소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1부 3) 주민등록등본1부 4) 전염성질환여부가 확인된 건강진단서(보건소) 5) 주민등록증 6) 본인명의 통장과 도장
실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강보험 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신청서 2)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 퇴원환자 단기가사지원

1. 신청대상

- 퇴원 후 가사돌봄지원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관내 노인

2. 서비스 내용

서비스제공	신체수발 :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등 가사지원 : 취사, 청소, 주변정돈, 정보기 등	
제공시간	최대 2주간 104시간(주 최대 52시간) ※필요시 1회 연장 가능	
서비스비용	13,400원 X 104시간 = 1,415천원	
	무료 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수급자
	50% 감면대상	기초연금수급자 이하 가구 서비스 비용의 50% 본인부담 (2주/70만 원 상당)
	실비이용	서비스 비용 전액 본인 부담(2주/140만 원 상당)

※ 문의 남부통합돌봄본부: 033) 245-5985 / 북부통합돌봄본부: 033) 245-5988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돌봄-03] 춘천시 노인통합돌봄전달체계 시범사업

③ 요양서비스

■ 수시방문형통합재가서비스

1. 신청대상

- 장기요양 1~4 등급자 중 수시방문을 희망하는 노인

2. 서비스 내용

- 식사, 복약, 배설도움 등 일정간격 수시 도움이 필요할 경우 1일 다회 방문

2인 1조	요양보호사 2인이 이용자 5명에게 수시방문
3인 1조	요양보호사 3인이 이용자 8명에게 수시방문

■ 주야간보호기관 재활프로그램

1. 신청대상

- 주야간보호소 이용 노인

2. 서비스 내용

구분	노인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	기능회복서비스
지원 내용	한림대학교 간호, 체육, 식품영양학과 교수 및 학생들과 연계하여 건강관리, 운동, 식습관지도, 말벗, 집단프로그램 등 제공	기관별 주2회 맨손체조, 소도구운동, 레크리에이션 등 생활체조 제공
제공 기관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춘천시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사)

※ 문의 남부통합돌봄본부: 033) 245-5985 / 북부통합돌봄본부: 033) 245-5988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돌봄-03] 춘천시 노인통합돌봄전달체계 시범사업

④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동행지원

1. 신청대상

- 필수외출 시 동행 지원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관내 노인

2. 서비스 내용

- 병·의원 진료, 은행업무,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시 동행 지원

이용시간	연간 최대 60시간	
본인부담금 ※ 이동 시 발생하는 교통비는 본인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1000원/1시간
	일반노인 (기초연금 포함)	5000원/1시간

■ 식생활지원

1. 신청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

※ 제외대상 : 장기요양등급자 중 재가서비스 이용 노인, 기초생계·의료수급자, 기존무료급식대상자 (단, 수시방문형 재가서비스 이용자, 재가급여 미이용자, 복지용구만 이용하는 자는 지원 가능)

2. 서비스 내용

구분	도시락지원	밀반찬지원
서비스 지역	동지역	남면, 남산면, 북산면, 사북면, 동산면
지원 항목	주 5일 도시락 배달 (주말·공휴일 제외) 1일 1식	주 1회 밀반찬지원
본인부담금	1,500원(1식당) 월평균 33,000원 (22일 기준)	8천원(월)

※ 문의 남부통합돌봄본부: 033) 245-5985 / 북부통합돌봄본부: 033) 245-5988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돌봄-03] 춘천시 노인통합돌봄전달체계 시범사업

⑤ 주택개조

1. 신청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 이하 노인가구 중 본인 명의 주택 소유자
- * 주택 소유자의 승인 받은 경우 임차인 지원 가능

2. 서비스내용

- 어르신들의 건강활동능력에 맞는 주거환경개선 지원
- 단차조정 등 낙상예방 시공
- 보조손잡이, 미끄럼방지, 문턱제거, 편의시설 설치 등
- 정기 안전점검 및 소방용품 지원(단, 동의한 경우에만)
- * 일부 추가시공 본인부담 10% 발생

3. 제외대상

-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혜받은 가구
- 무허가 건물 및 거주 불가 주택 거주자



※ 문의 남부통합돌봄본부: 033) 245-5985 / 북부통합돌봄본부: 033) 245-5988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돌봄-04]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기준: 2022 / 출처: 2022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지침)

1. 대상자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70% 이하 계층 중 다음과 같은 조건에 충족한 자

- 1)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2)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필요)
- 3) 희귀난치성 질환자(상병에 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필요)
-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자녀 또는 손자녀
- 5)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6)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경우

2. 지원내용

1)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2) 서비스 제공 기간·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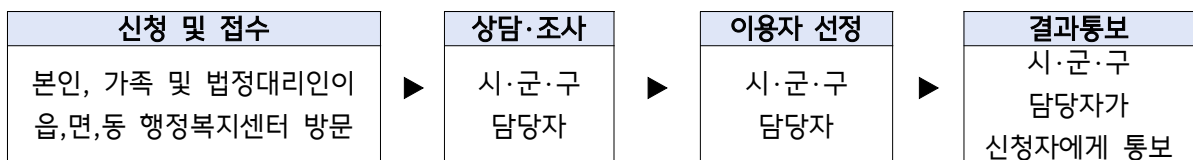
- 기간: 서비스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연장 불가
- 시간: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이용자가 희망하는 제공시간 선택)

3) 서비스 가격 (본인부담금)

구 분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70% 이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24시간	면제	월 22,460원	비해당
월 27시간	월 12,640원	월 25,270원	비해당
월 40시간	비해당	비해당	면제

*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3. 신청 방법



[돌봄-05]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기준: 2022 / 출처: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지침)

1. 대상자

- 만 6세 이상 만 65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

2. 지원내용

1) 서비스 내용

(1) 활동 보조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 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가사활동지원: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2) 방문목욕

- 활동지원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3) 방문간호

-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2)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비용

(1) 활동보조 급여비용

분 류	시간당 금액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4,800원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2,200원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2,200원

(2) 방문목욕

분 류	1회당 금액
①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78,580원
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70,850원

(3) 방문간호

분 류	1회당 금액
① 30분 미만	37,840원
② 30분 이상 ~ 60분 미만	47,450원
③ 60분 이상	57,090원

3.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월 한도액

1)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105,000원
2구간	435점 이상-465점 미만	6,660,000원
3구간	405점 이상-435점 미만	6,217,000원
4구간	375점 이상-405점 미만	5,773,000원
5구간	345점 이상-375점 미만	5,329,000원

2) 특별지원급여

구분	지급기간	월 한도액
출산(유,사산)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185,00원
자립준비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297,000원
보호자 일시 부재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297,000원

3. 신청방법

1) 신청인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

* 단,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을 직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가족 또는 친족) 대리 신청 가능

2) 신청장소

- 방문신청: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3) 신청서류

신청자 제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 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읍·면·동 확인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계층 여부
	-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

[돌봄-06]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기준: 2022 /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og.kr)

1. 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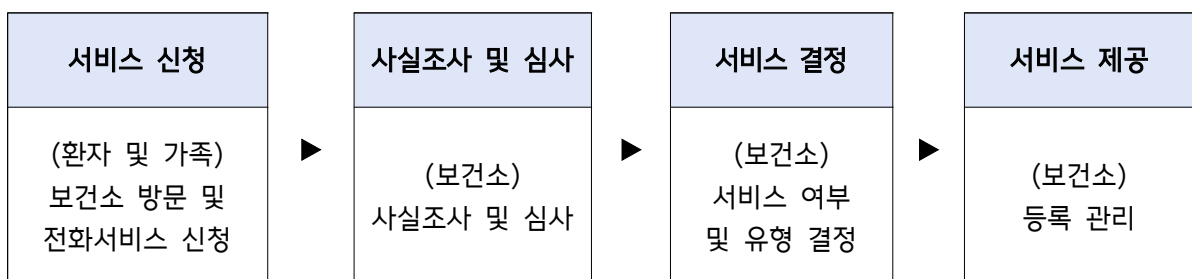
- 가정에서 치료 중이거나 요양 중인 암환자, 말기암환자, 암 생존자 등 모든 재가암환자
- 재가암환자관리 서비스를 희망하는 모든 암환자
-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암환자
- 취약계층 암환자 우선 지원(보건소별 상이)

2. 지원내용

구 분	세부내용
환자평가	활력징후측정, 통증점수평가, 의식정도 등 사정
투약지도	연고도포, 내복약 복용
기본 간호서비스	구강간호, 체위변경, 안정간호
증상 및 통증조절	약물치료, 통증조절, 물리치료, 주사치료
특수 간호서비스	특수장치 소독 및 관리, 관장, 관절운동, 산소요법, 욕창관리
자원봉사 서비스	개인위생관리, 가사일 보조, 차량봉사, 물리치료 보조
말기암환자 임종지지	
정서적·영적 지지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신청 방법

- 거주지 시·군·구 보건소(방문보건실)에서 신청 가능



[간호-01] 의료기관 가정간호

(기준: 2022/ 출처: 가정간호사회 홈페이지 www.hcna.or.kr)

1. 가정간호 서비스란?

병원 퇴원 후 또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 중 지속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한 경우 병원의 가정간호 전문간호사가 집 또는 시설로 방문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
(시설의 경우, 운영 방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입소 시설에 문의)

2. 대상 및 내용

만성질환자, 수술 후 조기 퇴원환자, 항암 치료 후 수액요법, 뇌혈관질환자, 욕창 및 상처간호가 필요한 환자 등 담당 의사가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기본간호**: 건강상태 파악 및 관찰, 문제 확인과 간호진단, 활력증후, 혈압측정, 체위변경 등
- **검사**: 혈액, 대소변, 가래, 상처분비물 등의 검사물 수집, 혈당검사, 산소분압검사 등
- **투약 및 주사**: 일반수액제, 항생제, 항암제, 진통제 등의 혈관주사, 근육주사 등
- **치료적 간호**: 산소흡입, 드레싱, 염증성처치, 욕창치료, 방광/요도세척, 도뇨관삽입, 기관지절개관 교환, 위관영양, 석션, 장루/인공결장루 간호, 배뇨/배변훈련, 관장, 회음부간호 등
- **교육 및 훈련**: 식이요법, 위관영양법, 투약방법, 특수처치기구 및 장비 사용법, 감염증상 판별법, 인슐린 자가주사법, 고/저 혈당시 응급처치, 체위변경법, 상처/기구 소독법 등

3. 방문비용(1회 기준, 변동 될 수 있음)

가정간호 비용은 기본방문료 + 진료행위별 수가(치료/재료비)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 건강보험(20%), 희귀/중증난치질환자(10%), 암환자(5%)
- 진료행위별 수가(치료/재료비): 국민건강보험 수가 기준, 병원구분(종별) 적용

(2022년 1월 1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기준)

	수가	건강보험 환자	산정특례환자	중증질환환자
기본방문료	75,340원	20% 본인부담	10% 본인부담	5%본인부담
진료행위별 수가 (치료 / 재료비)	건강보험 지정수가			
교통비	일반 수가	일반수가(정액)	일반수가(정액)	일반수가(정액)

- 비급여 재료비는 본인부담금 100% 적용
- 의료급여 1종은 교통비 정도 발생

4. 강원도 내 가정간호 이용가능 병원

구분	병원명	전화번호	주소
상급종합병원	강릉아산병원	033-610-3114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0 (일산동)
상급종합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033-741-0114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0 (일산동)
의원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 조합밝음의원	033-744-7571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83 3층(중앙동)

* 타 지역의 병원 정보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https://www.hira.or.kr>) 접속 -> 특수운영기관정보 -> 가정간호/재택 -> 가정간호 실시기관 검색 -> 전화문의

| 특수운영기관 검색

특수운영 항목 *	코로나19	응급 및 야간	중환자실	가정간호/재택	호스피스	장애인
	정신질환	심장질환	일차의료	보훈, 의료급여 등 의료지원	난임시술	기타

상세항목 *

<input type="radio"/>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기관 <input type="radio"/>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기관 <input type="radio"/>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기관 <input type="radio"/>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기관 <input type="radio"/>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기관 <input type="radio"/>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기관 <input type="radio"/> 중증소아재택의료 시범기관	<input checked="" type="radio"/> 가정간호 실시기관 <input type="radio"/>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input type="radio"/>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기관 <input type="radio"/>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기관 <input type="radio"/>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기관 <input type="radio"/>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기관
--	--

※ 가정간호 실시기관 :가정간호 실시기관이란 환자가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 또는 한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가정전문간호사로 하여금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간호, 투약, 주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병원을 말합니다.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지역 강원 ▼ 시/군/구 선택 ▼ 병원명을 입력하세요.

5. 신청방법

- ① 환자 및 보호자가 본원 질환관련 진료과 방문
- ② 의료진의 진단서를 발급(가정간호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함.)
- ③ 가정간호 신청 병원 방문하여, 해당과 혹은 가정의학과 담당의사와 상담 의뢰.
- ④ 해당병원 가정간호팀에서 상담 후 신청.

[간호-0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방문간호

(기준: 2022 /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1. 방문간호 서비스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근거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대상자 집을 방문하여, 간호 / 진료의 보조 / 영양상담 등의 간호 지원을 자택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2. 대상 및 내용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 중 간호처치영역에 표시된 대상자

- **기본간호** : 건강상태 파악 및 관찰, 체위변경, 구강간호, 개인위생 관리 등
- **추가간호** : 콧줄 교환, 단순도뇨 및 소변줄 삽입/교환/관리, 호흡기 간호(가래석션, 산소요법), 욕창 예방 및 치료, 단순 상처 치료, 관장 등
- **재활운동** : 보행관리, 능동적 수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 **투약관리** : 투약이행 관리, 투약 정보 제공 및 중복 처방 확인, 투약 후 반응모니터링.
- **교육 훈련** :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운동요법, 인지훈련 등

3. 방문비용

이용시간	22년 수가	일반(15%)
30분 미만	37,840	5,676
30분~60분 미만	47,450	7,118
60분 이상	57,090	8,564

- 의료급여 환자는 면제
- 등급별 재가급여 월한도액 초과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

4. 이용방법

1)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병원 방문 -> 의사로부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 방문간호 취급 재가요양센터 의뢰

2)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신청 가능

[간호-03]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기준: 2021 출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1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

1. 대상자

경제적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하위 20% 등
사회적 기준	북한이탈주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쉼터 또는 미인가시설,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문화적 기준	다문화가족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등
기타	독거노인,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장애인 가족, 암 및 정신질환자 가족 등

*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자는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단, 인지지원 등급자는 포함)

2. 지원내용

- 보건소 내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등이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제공
- 건강문제관리, 만성질환 관리, 합병증 예방, 건강행태개선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구분	서비스내용
기본 건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대상자 확인 및 검진 안내 • 환절기 황사, 미세먼지 대비 건강관리 • 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건강관리 • 겨울철 한파 대비 건강관리 • 지진 등 재난 대비 건강관리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스크리닝 • 보호자(가족, 동거인 등) 상담 등 • 그 외 시군구 복지 관련 부서에 연계(드림스타트사업,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등)
건강행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스크리닝 • 일반검진, 생애전환기검진 결과확인 및 직접 방문상담 실시 • 생활습관 상담,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동기 부여 및 교육 •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스크리닝 • 일반검진, 생애전환기검진 결과확인 및 직접 방문상담 실시 •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 상담, 건강생활실천 동기부여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교육 • 복용 약물에 대한 점검 및 상담 • 암으로 인한 증상 및 통증조절을 위한 정보제공 •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

<p>임산부·산생아 및 영유아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임부 및 정상임부의 건강문제 스크리닝 • 산육기 평가에 따른 산후 건강관리 • 모유수유 정보제공 및 상담 • 산생아·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문제 스크리닝 및 예방접종 관리 •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
<p>노인 허약예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에 대해 허약노인 판정평가 실시 • 운동·영양·구강관리·요실금 및 우울예방·인지강화·낙상예방을 위한 허약노인 중재프로그램 제공 • 저작, 연하, 발음, 타액 분비 등의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입체조 실시 • 치매 관련 건강관리 • 취미, 종교 활동 등 사회적 참여 지지 및 독려 • 가정 내·외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
<p>다문화가족 및 북한 이탈주민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습관 상담,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동기 부여 및 교육 • 다문화가족 지지체계 확인 및 가족 내 의사소통 장애요인 파악 • 다문화가족의 문제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중재와 상담 • 북한이탈주민의 결핵, B형간염 등 감염성 질환을 가진 건강위험군 발굴 및 등록 •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등 정신건강문제 스크리닝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방문하여 건강상담 및 교육 •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
<p>장애인 재활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증진을 위한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관절구축예방운동 및 교육 • 기본 건강관리 : 위생, 영양, 피부관리(욕창, 체위관리), 구강위생관리 등 • 연하장애·호흡장애 관리, 배변·배뇨관리 교육 및 훈련, 저작능력향상 운동 교육 • 장애심화 위험요인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위한 자가건강관리 교육 • 2차 장애예방을 위한 낙상 및 안전관리 교육 •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

3. 신청 방법

- 보건소로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해서 신청 가능
- 구청 사회복지과,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로 의뢰 통해 신청

[보조기구 및 복지용구-01]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기준: 2022 /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1. 지급 기준

-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및 시설급여 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 급여비용

일반대상자	감경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15%	① 6% :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 대상자 ② 9% : 보험료 감경대상자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이하)	없음

- 연간한도액: 최초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연간 160만원한도(구입+대여 포함)
- 내구 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가 가능함.
단, 성인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 기간 내에서 구입할 수 있음.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 방지역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 팬티는 4개까지만 구입 가능
-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가능
- *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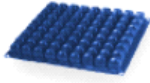


2. 이용 절차

복지용구사업소 상담(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제출)
 → 가능여부 조회 → 복지용구 계약 체결 및 제공 → 계약내용통보 → 청구 및 지급 →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작성

3. 복지용구 유형 및 사용연한

구입품목 10종 (사용연한)		대여품목 6종 (사용연한)		구입 또는 대여품목 (사용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변기(5년) • 목욕의자(5년) • 성인용 보행기(5년) • 욕창예방 방석(3년) • 미끄럼 방지용품 - 매트, 양말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변기 • 지팡이(2년) • 안전손잡이 • 요실금팬티 • 자세변환용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동휠체어(5년) • 전동침대(10년) • 목욕리프트(3년) • 배회감지기(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욕조(5년) • 수동침대(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창예방 매트리스(3년) • 경사로 실외용(8년) • 경사로 실내용(2년)

• 구입품목 : 10개 품목

품목(사용 가능 했수)	용도	품목(사용 가능 했수)	용도
	이동변기(5년)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성인용보행기(5년)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외에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 바퀴가 달린 기구
	목욕의자(5년) 편안한 목욕 및 자세유지를 돕는 목욕용 의자		안전손잡이 실내에 부착하는 지지용 손잡이와 화장실 거치용 손잡이 등으로 안전 사고 예방 및 자립환경 조성을 위한 용품
	미끄럼방지용품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품 (양말, 매트 등)		간이변기 와상상태, 소변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지팡이(2년) 보행 시 도움을 얻기 위하여 짚는 지팡이		욕창예방방석(3년) 장시간 휠체어 등에 앉아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깔아두는 방석
	자세변환용구 장시간 누워있을 때 자세 및 위치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요실금팬티 일회용이 아닌 패드가 부착되어 세탁 후 반복사용이 가능한 일반 속옷형태의 제품

· 대여품목 : 6개 품목

품목(사용 가능 했수)	용도	품목(사용 가능 했수)	용도
	수동휠체어(5년)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앉은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바뀌를 단 의자		전동침대(10년) 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앉지 못하는 경우 전동으로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는 침대
	수동침대(10년) 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앉지 못하는 경우 수동으로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는 침대		목욕리프트(3년) 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실시하기 위한 용품
	이동욕조(5년) 보행이 불편할 경우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동식 욕조		배회감지기(5년) 인지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용품

· 구입 또는 대여 품목 : 2개 품목

품목(사용 가능 했수)	용도	품목(사용 가능 했수)	용도
	욕창예방 매트리스(3년)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장시간 한 자세로 누워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2년) 경사로(실외용, 8년) 실내외 보행,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보행기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이동경로 확보를 위한 용품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조기구 및 복지용구-02]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기준: 2022 / 출처: 건강보험공단)

1.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제도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 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

2. 보조기기 지급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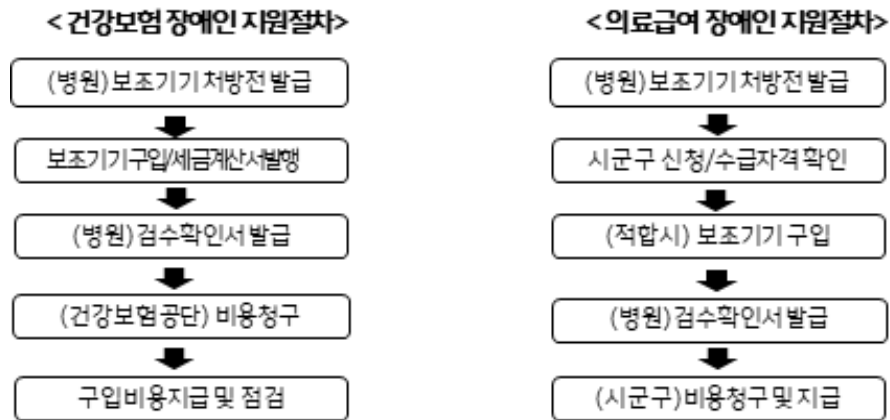
- 건강보험: 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실 구입가의 90% 지원. 초과시 본인부담
- 의료급여: 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실 구입가의 전액지원. 초과시 본인부담
- *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 연한 내에 1인당 1회(다만, 신체적 변형, 훼손 등으로 담당의사가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내구 연한 내 재신청 가능)

3. 주요 보조기기 유형별 기준액 및 내구 연한 [2021년 기준]

유형	용도	상한액(원)	내구연한
지팡이	지체장애 및 뇌병변 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20,000	2년
목발(crutches)		15,000	2년
휠체어(wheel chair)		480,000	5년
저시력보조안경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100,000	3년
콘택트렌즈		80,000	3년
돋보기		100,000	4년
망원경		100,000	4년
의안(plastic eye)		620,000	5년
흰지팡이		25,000	0.5년
보청기(hearing aid)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1,310,000	5년
체외용 인공후두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500,000	5년
전동휠체어	보행이 불가능한 자로서 팔 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2,090,000	6년
전동스쿠터 (Moped)	보행이 불가능한 자로서 상지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장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1,670,000	6년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2개 1세트)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전력 공급용 장치	160,000	1.5년

* 이외 보조기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신청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 장애인보조기기급여제도 소개 > 보험급여 품목안내

4. 보조기기 구입절차



-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는 구입하기 전, 건강보험공단에 처방전, 보조기기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지급이 결정된 경우만 지원 가능

※ 수급자 및 차상위 자격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대상자: 수급자 및 차상위 자격을 가진 뇌병변 장애인
- 교부품목은 총 34종으로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장애유형	교부품목(17종)	상한액(원)	내구연한	
뇌병변·지체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50,000	3년	
	보행차(좌석형,탁자형 등)	200,000	5년	
	목욕의자	600,000	5년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300,000	8년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250,000	5년	
	음식섭취 보조기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50,000	1년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1,500,000	3년	
	이동변기	600,000	5년	
	환경 제어 장치	400,000	3년	
뇌병변·지체· 심장·호흡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350,000	4년	
	휠체어 액세서리	100,000	5년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150,000	2년	
뇌병변·지적· 청각·언어	대화용장치	600,000	4년	

5. 문의

- 건강보험 장애인: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의료급여 장애인: 행정복지센터

[보조기구 및 복지용구-03] 보조기기 무료대여

(기준: 2022 / 출처: 건강보험공단)

1. 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 무료대여

- 대여대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단, 입원치료 중인 환자는 제외
- 대여방법: 신청자/대여자가 신분증 지참하여 건강보험공단지사 방문신청
- 무료대여 품목은 지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구분	종류	기본대여기간	연장	최대 기간
휠체어	기본형/아동용	기본 2개월	1개월 단위 연장 2회	4개월 사용
보행기	바퀴	기본 2개월	1개월 단위 연장 2회	4개월 사용
	지그재그	기본 2개월	1개월 단위 연장 2회	4개월 사용
목발	나무/ 알루미늄	기본 2개월	1개월 단위 연장 2회	4개월 사용



2. 대여지사

- 대기자가 많을 수 있으며, 거주하시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해 보세요.

지역본부	시도구분	대여지사
서울강원	강원	강릉, 동해, 삼척, 속초, 원주횡성, 춘천, 태백정선, 평창영월, 홍천

3.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보조기구 및 복지용구-04] 강원도 보조기기센터

(기준: 2022 출처: 강원도 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1. 이용 대상자

- 강원도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65세 이상 어르신

2. 주요 사업

- 보조기기 서비스: 서비스 대상자에게 맞는 적합한 보조기기 확보, 사용효율성 높이기 위한 상담에서 사후관리까지 on-stop 진행
- 보조기기 유지 관리: 사용중인 보조기기 점검, 소독 및 세척서비스 실시
- 보조기기 재사용: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되어 있는 보조기기 수거하여 재정비 후 장애인에게 무료로 제공
- 전시장 견학 및 교육: 보조기기 체험 및 사용정보와 활용방법 등 정보 제공

3. 신청

- ☎ 1670-5529, 내선번호 13번
- 온라인 신청: 사이트(www.gatc.or.kr)접속-> 서비스 신청 -> 온라인 신청

4. 문의

- 강원도 보조기기센터 ☎ 033-248-7751~4



[보조기구 및 복지용구-05] 가정 산소치료

(기준: 2022 / 출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안내 중 요양비지급안내)

1. 지원대상(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 1) 90일 미만의 신생아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호흡기 장애인
- 2) 중증의 만성심폐질환 등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가스 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에 따라 의사 처방이 가능한 경우
- 3) 2019.7.1. 전 호흡기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검사 없이 내과, 결핵과, 흉부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2. 지급 금액

- 기준금액 이내 금액으로 대여한 경우 : 대여금액의 90%
-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 : 기준금액의 90%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E)
: 기준금액과 실 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 해당 금액지급

[기준금액]

- 가정용 : 12만원/월
- 휴대용 : 20만원/월(15일 이내 대여 시 10만원/월)

3. 처방전문의 및 처방기간

- 처방전문의: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포함)
- 처방기간: 1회에 1년 이내

4. 제출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1부
-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 1부
- 건강보험공단 등록된 업소에서 발행한 산소치료서비스 표준계약서 1부
- 세금계산서 1부(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전액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 * 본인부담금만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액)

5.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로 방문 또는 우편 통해 원본서류 제출

[주거-01] 주택 개조

(기준:2021 / 출처 : 장애인 주택개조 매뉴얼, 중도장애인가족을 위한 가이드북)

1. 주택개조 시 고려사항

- 환자의 신체 상태나 기능에 따라 주택 내 생활공간에서 계획되어야 할 사항은 달라야 합니다. 지팡이나 목발을 이용하여 보행이 가능한 경우와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손이나 팔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기어 다니거나 앉은 채로 이동하는 경우,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만 지내는 등 상태의 차이를 반영한 공간계획이 이루어져야 각 주거공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도움 보행이 가능한 환자

특성	필요한 편의시설
목발, 지팡이, 워커 등 이동 보조기구 사용으로 휠체어 사용자만큼 넓은 공간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분한 활동공간과 통과 유효폭 확보
몸을 굽히거나 일어서기 어렵고, 쉽게 넘어지며 빨리 또는 멀리 걸을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자나 침대를 이용 안전손잡이 설치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재 선택 바닥이나 벽면 장애물 제거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더 어렵거나 불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차 제거/ 경사로 설치
장시간 서서 작업하기 힘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식 겸용 작업대 설치
손과 팔에 기능장애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동이 용이한 물품 각종 생활 편의용품 사용

▪ 휠체어 사용 환자

특성	필요한 편의시설
휠체어 활동에 필요한 소요공간이 평소에 비해 약 2~3배의 폭과 4배의 공간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80cm이상의 출입문 폭 충분한 통행 폭과 회전공간 확보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하부공간 확보
단차, 턱 등의 높이차는 이동의 장애물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차제거 / 경사로 설치
손이 닿는 범위가 좁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140cm 범위 내에 작업공간 배치
휠체어로부터 타고 내리는 동작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옮겨지는 장소와 휠체어 높이를 같게 함

▪ **중증 외상환자**

조금이라도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환자의 자립의욕을 증가시키고, 각종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시스템이 필요

특성	필요한 편의시설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영역이 극히 제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모컨, 전동커튼, 전동칫솔 등 각종 전동기구 사용 ▪ 컴퓨터로 작동되는 환경제어시스템 설치 ▪ 음성으로 작동되는 음성 인식시스템 설치
가족이나 간병인(요양보호사 등)의 보조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프트 등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각종 보조용품 사용

[주거-02] 주거급여

(기준: 2022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마이홈)

1. 주거급여란

-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2. 지원가구 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 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4인기준 235만원) 이하 가구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022년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주거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4. 지원 내용

: 임차가구 지원 -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급

: 자가가구 지원 - 주거 안정에 필요한 주택 개량 지원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 개량 지원.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 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 시설

5.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인터넷 접수
-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마이홈(www.myhome.go.kr) 확인

[교통 및 이동-01] 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

(기준: 2022 / 출처: 강원도광역이동지원센터)

1. 대상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 교통수단 운영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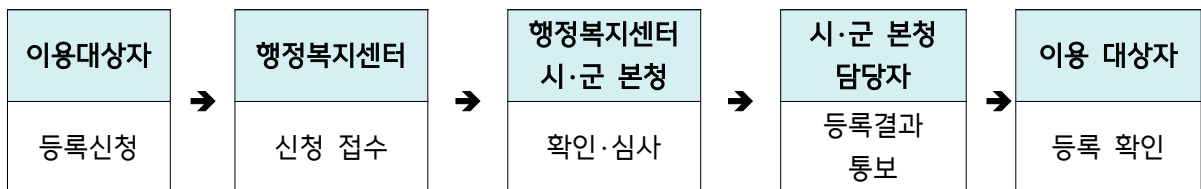
-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 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 3)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 4) 그 밖에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기타 시·군 조례에 따라 대상자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문의하세요.

2. 서비스 내용

- 차량 운영을 통해 외출보조, 병원이용 등 각종 이동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차량운행 기본요금 : 4km /1,100원 (초과요금 1km /100원)

3. 신청 방법



4. 문의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연락처 : 강원1577-2014 [HTTPS://CALL.GWD.GO.KR/](https://call.gwd.go.kr/)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장애인콜택시, 바우처택시 등)는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대상자, 구비서류, 이용요금 및 관외이동 등 지원 기준과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문의 후 서비스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교통 및 이동-02] 119 안심콜서비스

(기준: 2022 / 출처: 유비쿼터스119 신고시스템)

1. 119 안심콜 서비스란?

- 장애가 있는 분, 고령자 및 독거노인 등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
- 안심콜 서비스에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119상황실에서 출동 시 미리 준비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실시 (보호자에게는 환자의 응급상황발생 사실과 이송병원 정보가 SMS로 자동 전송됨)

2. 신청방법



- 인터넷을 통한 본인 또는 대리인 등록
- 휴대전화 및 일반·유선전화 번호로 등록
- 등록자 전화기로 119 신고하여야 119상황실 및 출동대가 사전 등록 정보 활용
- 등록된 개인 정보는 긴급구조활동 상 참고 정보로 이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음
-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필요

[생계-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2022 / 출처: 복지포)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경우,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평가하여 국가에서 생계비, 주거비 또는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
- 질환과 관련하여 경제 활동이 중단되고 지속적인 의료비와 생계비가 부담되는 경우 평가 기준에 부합되면 신청을 통해 국가가 지원

2.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 종류별 최저 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원칙적으로 가구단위 보장이나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로 보장함)
- 선정 기준

(단위: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0% 이하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이하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6% 이하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교육급여 중위소득의 50% 이하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 지원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지원

3. 신청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신청

[생계-02] 차상위본인부담경감제도

(기준: 2022 / 출처: 복지포)

1.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제도란?

-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의 의료비를 경감하여주는 제도
- 대상자는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2. 지원 대상

- ①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단위:원/월)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의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 ②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충족 (1인2,333,774원)

3. 신청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신청



[생계-03]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준: 2022 / 출처: 복지포)

1.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재산, 금융 재산 기준에 따라 긴급생계비 등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2. 지원 내용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검사, 치료 등 의료 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교육지원	수업료, 학교 운영비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그 밖의 지원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3. 기준

(2022기준)

구분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금융 기준
국가형 긴급복지지원	중위소득 75% 이하	대도시 241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하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한시적기준 완화)	중위소득 100% 이하	379백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4. 신청

- 각 거주지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

[생계-04] 추천형 위기가구생활안정지원사업

(기준:2022 / 출처 : 춘천시청)

1. 추천형 위기가구생활안정지원사업이란?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으로 인한 생계 곤란과 질병·사고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로 고통을 겪는 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춘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

2. 지원 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세대원
(단, 위기상황과 소득기준이 모두 부합되는 경우에만 지원)

1) 위기상황

- 코로나 19로 인한 소득감소(25%), 실직, 무급휴직, 휴·폐업한 경우
- 갑작스런 질병·사고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
- 공공요금(전기·가스·상하수도·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 질병·사고로 의료비, 간병비가 부담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중양, 지자체)발굴 대상자인 경우

2) 소득기준 : 중위소득 120%이내(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원/월	2,193,000	3,706,000	4,781,000	5,852,000	6,909,000	7,954,000	8,997,000

3) 재산기준 : 1억 5,200만원 이하 (금융기준 : 800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

3. 지원 내용

생계비	454,900원	의료비	100만원	공과금체납액*	50만원
간병비	100만원	난방비	30만원	주거수리비*	100만원 이내

*공과금 체납액은 2년 이내 중복 불가

*주거수리비는 연 1회 지원, 생계·주거급여 수급자는 생계·주거비 지원불가

4.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생계-05]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기준: 2022 / 출처: 복지포)

1.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이란?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2. 지원 대상

구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지원 대상자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중복) ※3급 중복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경우 (예:3급+5급 또는 3급+6급) ※ 다만, 중복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되는 자는 제외 예시) 4급+4급→3급이 된 자는 중복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3급,4급,5급,6급)
수급 자격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총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2021년과 동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지원 금액

(단위 : 원)

구분	보험유형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만 18세 ~만 64세	만65세 이상	만 18세 ~만 64세	만 18세 ~만 64세	만 65세 이상
장애인 연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80,000	380,000	300,000	80,000	380,00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370,000	70,000	300,000	70,000	70,000
	차상위초과	320,000	40,000	300,000	20,000	40,000
장애수당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40,00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20,000		

4.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생계-06] 국민연금 장애연금

(기준: 2022 / 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1.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란?

-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2. 수급 요건

- (초진일 기준) 초진일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인 대상자
- (보험료 기준)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낸 기간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 (장애 정도)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않는 경우로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국민연금공단 심사를 통해 결정 1~4급)에 해당되는 대상

3. 지원 내용

- 장애등급,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 소득월액평균 등을 고려하여 연금액 산정
-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 정도에 따라 1-4급으로 결정

수급요건	장애등급	급여수준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	1 급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 급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 급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 급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 장애등급에 따라 1급~3급까지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져 매월 연금으로 지급되며 장애 4급의 경우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구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장애급여와는 목적이 상이합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등록증만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해야 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하여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 또, 기존의 장애가 악화 될 시,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연금액을 변경청구 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일자리-0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준: 2022 /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서비스 대상 : 중증장애인 또는 고용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근로자
- 지원한도 : 1일 8시간 ,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
- 신청절차 : 사업주 동의를 받아 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

2.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

- 신청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만18세 이상~69세 이하 장애인
- 단계별 프로그램 : 진로상담, 직업훈련, 인턴 프로그램, 취업 알선, 사후관리 등

3. 온라인 취업준비사이트

대기업, 공기업, 우수 중소기업 등 취업을 준비하는 장애인을 위해 취업준비, 서류전형, 직무적성검사, 면접전형 등 채용 단계별 취업 콘텐츠와 장애인 채용 설명회 자료 및 채용 성공 사례등을 온라인으로 무상 제공

- 신청대상 :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 제공서비스 : 취업준비, 서류 전형, 직무적성검사 등 취업콘텐츠 제공

4. 문의

-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일자리-0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준: 2022 / 출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국에서 one-stop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 센터

1. 주요 업무

- 취업지원 :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인업체 인력지원 서비스 제공
- 고용보험관리 : 근로자 실업급여, 능력개발비용 및 사업주 고용유지, 교육 훈련 비용 지원 관리.

2. 고용센터

- 실직자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급여 및 재취업지원, 구인,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사업 등 종합고용 서비스 제공

3. 일자리센터

- 구직자 취업지원(면접기술 코칭, 동행 면접 등 일자리 발굴, 채용행사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4. 새일센터

- 출산 육가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과 직업훈련, 인턴십연계 등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5.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 설계지원,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의 종합 서비스 제공

6. 문의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www.workplus.go.kr



[일자리-03] 공공근로

(기준: 2022 / 출처: 서울시)

1. 공공근로 사업이란?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로 근로의사가 있는 각 지방자치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생계를 보장하는 일자리 사업
주로 장기실직자나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공공일 자리를 제공해 최소한의 생계보호와 근로의욕 향상을 목적으로 함.

2. 공공근로 사업 종류(지자체 마다 다름)

[서비스지원사업]

- 각종 도우미 사업
- 공공기관 지원업무(민원안내, 행정서비스)
- 각종 현황조사 지원
- 공공청사 출입자 발열체크 등 방역

[환경정화사업]

- 공원, 관광지, 하천, 도로변 등 쓰레기 수거
- 공공시설 개보수, 공중화장실 관리
- 꽃길 조성, 단순식재 조성등

3. 공공근로 신청 자격 (2022년 기준)

: 지자체 마다, 기준년도마다, 신청 기준 및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각 지자체 통해 확인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각 지자체 주민 중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3억 원 이하인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및 그 배우자 제외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제외)

4. 문의

- 각지자체 동사무소 및 구청.

[사회복귀-01]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기준: 2022 / 출처: 국립재활원)

국립재활원에서는 전국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운전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은 지역에서도 신청 가능

1. 교육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지체, 뇌병변, 청각 등록 장애인
- 제 1종 및 제 2종 보통면허(수동, 자동) 취득 희망자 및 소지자
- 운전 시 보조기기가 필요한 면허조건(E,F,G,H,I)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운전보조기기 없이도 교육 가능

뇌병변장애인은 운전인지각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 가능

2. 교육 내용

1) 운전교육과정

교육과정	운전면허취득 과정		운전면허소지자 과정	
	장애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도로연수교육
교육시간	8시간/4일	10시간/4-5일	10시간/4-5일	10시간/4-5일
교육내용	장애기능시험 교육	도로주행시험 교육	장애로변화된 신체기능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보조기기 적용 교육 실시	다양한 도로환경에서 실제 운전 할 수 있도록 도로 주행 교육 실시

2) 장애인 자동차 보조기기 상담

- 장애 정도에 맞는 자동차와 보조기기 정보 안내

3. 문의

-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장애인 운전교육 02-901-1553, 1552, 1554

자동차 보조기기 및 운전체험 02-901-1556,1555

[사회복귀-0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준: 2022 / 출처: 복지로)

문제음주자 및 알코올 등 중독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독자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

1. 이용대상

- 지역사회 내 알코올의존자, 문제음주자와 그 가족 등의 지역주민
-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퇴원한 알코올 의존자 중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하는 알코올 의존 및 남용자
- 기타 알콜 관련 상담 및 재활훈련 서비스가 필요한 자

2. 서비스 내용

- 알코올 등 중독자 관리, 중독자 가족지원
- 중독 피해 예방 및 교육 등

3. 강원도 중독통합지원센터 연락처

연번	센터명	주소	상담전화(연락처)
1	춘천시중독통합지원센터	춘천시 삭주로 84	033-255-3482
2	원주시중독통합지원센터	원주시 원일로 139 원주보건소 지하 1층	033-748-5119
3	강릉시정신건강복지센터	강릉시 용지로144 리치빌딩 4층	033-651-9665

[정신건강-01] 정신건강복지센터

(기준: 2022 / 출처: 복지로)

1. 대상자

- 우울, 불안, 중독 등과 관련한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

2. 서비스 내용

- 우울증, 불안, 중독 등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교육
- 만 18세 이하 또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상담, 교육, 의료비 지원 등)
- 정신질환자 대상 투약/치료관리, 상담 및 사회복귀 지원

3. 이용 방법

-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4. 강원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18개소

연번	센터명	주소	상담전화(연락처)
1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춘천시 효제길 35	033-242-7574
2	원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원주시 원일로 139 건강문화센터 4층	033-746-0199
3	강릉시정신건강복지센터	강릉시 남구길23번길 24 3층, 4층	033-651-9668
4	속초시정신건강복지센터	속초시 중앙로17번길 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33-633-4088
5	홍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로5 홍천군건강증진센터 2층	033-435-7482
6	횡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379 횡성보건소 2층	033-345-9901
7	양구군정신건강복지센터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42 보건소 4층	033-480-2789
8	화천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화천군 화천읍 강변로 111	033-440-2863
9	인제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40번길 34	033-461-7427
10	고성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30	033-680-3856

연번	센터명	주소	상담전화(연락처)
11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동해시 청운로 96	033-533-0197
12	태백시정신건강복지센터	태백시 태백로 905	033-554-1378
13	삼척시정신건강복지센터	삼척시 척주로 76	033-574-0190
14	횡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379 횡성보건소 2층	033-345-9901
15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평창군 평창읍 중부로 61	033-333-0199
16	양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9-5, 2층 정신건강증진센터	033-673-0197
17	화천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화천군 화천읍 강변로 111	033-440-2863
18	고성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30	033-680-3856

* 지역별 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이트 (<https://kfsp.org/sub.php?menukey=28>)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

기관명	대표전화	설명	업무시간
자살예방핫라인(전국)	1577-0199	정신보건센터 자살상담 대표전화	24시간
생명의 전화	1588-9191	민간자살상담 대표전화	24시간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상담전화	24시간
한국청소년상담원	1388	청소년 상담 대표전화	24시간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청소년자살예방센터)	1599-3079		10:00 ~ 21:30 (월~토)
국회 생명사다리 상담센터	02-788-0479	국회 사무처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인 상담전화	09:00 ~ 18:00 (월~금)

[돌봄가족을 위한 제도-01]

가족돌봄 휴가 제도

(기준: 2022 / 출처: 고용노동부)

1. 가족돌봄휴가제도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 22조 2항)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 가능

2. 허용예외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 근로자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 허용 제외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보아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허용

3. 휴가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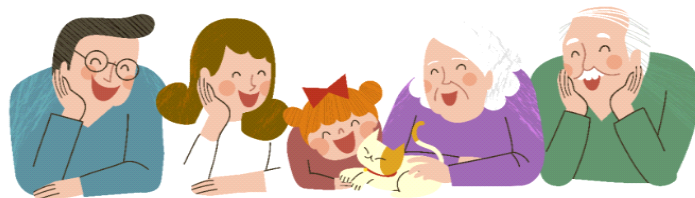
가족돌봄 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나눠 사용 가능

4.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사업주에게 제출

5.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돌봄가족을 위한 제도-02]

치매환자 가족 휴가 제도

(기준: 2022 / 출처: 중앙치매센터)

1. 치매가족 휴가제이란

치매환자 가족휴가제는 돌봄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에게 휴식을 주는 서비스

2. 내용

돌봄으로 지친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치매환자(장기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월 한도액과 관계 없이 연간 최대 6일까지 단기보호급여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3. 이용대상

- 1) 단기보호급여 : 1~5등급 치매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종일 방문요양 : 1~2등급 치매수급자

4. 비용

- 1) 단기보호 급여
: 각 등급별 1일(0시~24시)당 급여 비용에 일수를 곱한 총 급여비용 중 15%를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 2) 종일 방문요양
: 1회(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에 기본 급여비용(82,300원)에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가산한 총 급여비용 중 15%를 부담

5.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본 책자는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사회사업팀의
[집으로 퇴원하는 환자를 위한 사회복지정보 안내서]를 수정·보완하였습니다.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사회사업팀

- 위치 : 본관 지하 1층
- 전화 : 033-240-5149/5676, 팩스 033-240-5491